

#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62호
----------	------

제 출 일 자 : 2004. 11. 29  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가.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비하여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,
- 나.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(주민자치과)의 존속기한이 「여유기구제」 시행과 연계, 연장 가능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5. 6. 30일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총무국장 분장사무 조정
  - 시정행사,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사항
  - 「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」으로 조정
- 나.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조정
  - 「주민자치과」 존속기한 : 2004. 6. 30 → 2005. 6. 30 까지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 음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- 라. 기 타
 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  - 2)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중 “시정행사,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”을 “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조례 제493호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한시기구)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6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2. 제14조중 행정타운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조례 제493호 부칙 제2항제1호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총무국) ① (생략)</p> <p>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<u>시정행사,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~9 (생략)</p> <p>조례 제493호(2001. 12.19) 부칙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(한시기구) 제6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 까지로 하고, 제14조중 행정타운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제6조(---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1. <u>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~9 (현행과 같음)</p> <p>조례 제493호(2001.12.19) 부칙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-----) <u>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u></p> <p>1. <u>제6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2. <u>제14조중 행정타운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I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·인력보강 (행정자치부 '04. 11.3)

-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과 관련, 전담기구가 없어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
- 소관부서 : 전담기구 소속은 공무원인사, 후생·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총무과에 설치
- 기구·정원 : 1담당 3명 원칙
- 인력 승인 : 1명(6급1)

### II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(행정자치부 '04. 6.29)

-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 : 기한 만료시, 인력 4~5명
- 한시기구(주민자치과) : 개정중인 「여유기구제」로 운용 가능
-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 까지 한시기구 시한연장 가능 : 2005. 6. 30일까지(1년간)